

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

가. 가업현황

상 호 (법 인 명)		사업자등록번호	
성 명 (대 표 이 사)		생 년 월 일	
개 업 연 월 일		업 종	

나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(해당되는 곳에 √ 표 기재)

중 소 기 업 여 부	[] 해당 [] 해당 안 됨	상장여부 (상장일)	[] 상장(. .) [] 비상장
중 견 기 업 여 부	[] 해당 [] 해당 안 됨	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	

다. 증여자

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
가 업 영 위 기 간		대 표 이 사 재 직 기 간	
최 대 주 주 등 여 부		특수관계인 포함 보유 주식 등 지분율	

라. 수증자

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
증 여 자 와 의 관 계		임원/대표이사 취임일	
주 소		(㉠)	

마.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

수증일	㉠ 수량	지분율	㉡ 단가	① 주식 등 가액 (㉠×㉡)	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) 2.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.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"가. 가업현황"에서 '업종'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.
- "나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"에서 '중소기업'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.
- "나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"에서 '중견기업'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.
- "마.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"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적습니다.
- "마.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① 주식 등 가액"란은 증여일 현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- "마.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"란은 "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)"의 ㉡의 금액을 적습니다.